

도, 대북전단 살포 뿌리 뽑는다

# 김포서 선교단체 또 덜미 경찰 공조 사법조치 추진

경기도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선교단체를 적발, 사법조치에 나섰다.

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소재 A 선교단체는 지난 19일 밤 7시50분경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, 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차량으로 이동하다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. 적발 당시 차량에는 A 단체 관계자인 외국인 남성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. 도

는 19일 밤 8시30분께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사실을 접한 후 즉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과 등을 확인했다.

도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에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를 전달했다.

도 특사경 관계자는 “현재 대북전

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”라며 “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”라고 말했다.

한편 도는 지난달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김포시를 비롯한 5개 접경 시·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

**도특사경·서울경찰청 긴밀한 협력  
도내 접경지역 안전 위협행위 차단**

는 내용을 담은 ‘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명령’을 오는 11월30

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.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, 운반, 살포,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.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(위험구역의 설정) 및 제79조(벌칙)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. 이호준기자